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9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12월 12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동의 하나, '예산의 범위 내에서'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

2. 주요 골자

- 안 제36조제1항에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6조제1항 중 “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”을 “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6조(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6조(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-----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6조(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-----.</u>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필요한 지원을 할”을 “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6조(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6조(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</u> <u>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